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3-6	111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2:14) ”

## 바다교회도시공동체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7호**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652-2호 두레학숙 ☎859-0430 96년 2월 15일(통권13호)

### 현명한 인간

오늘날 정직한 사람과 애국자의 시세는 얼마인가? 그들은 주저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청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추진하여 효과를 거두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악을 몰아내어 더 이상 누우치지 않아도 되기를 태평하게 기다리고 있다. 기껏해야 그들은 값싼 투표나 하고 정의가 그들 옆으로 지나갈 때 허약한 모습으로 성공을 빌 정도이다. 덕 있는 사람과 덕의 후원자의 비율은 1대 999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잠시 간수하고 있는 사람과 거래하기보다는 그 진짜 주인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쉽다.

모든 종류의 투표는 약간의 도덕적 색채를 곁들여서 선과 악, 곧 도덕 문제를 가지고 노는, 장구나 주사위놀이 같은 일종의 놀이이므로 따라서 내기가 다르게 마련이다. 투표자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아마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투표하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문제는 다수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투표의 의무는 편법을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정의를 위해'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행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투표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승리했으면 하는 당신의 욕망을 희미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정의를 우연의 자비에 맡겨 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힘을 빌어 승리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행동에는 덕은 거의 없는 것이다. 대다수가 마침내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 투표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노예제도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투표로 폐지시킬 노예제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만이 노예인 것이다. 자신의 투표에 의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투표만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

< 헨리소로우 - "시민 불복종에 관한 에세이" 중에서 >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4-25) ”

# 피난처 재정보고 95년 1월-10월

## < 가. 수입내역 >

-8.007.689원(94년이월금) + 10.946.760원(95년순수입) = 2.939.071원(총수입액)

월별	순수입	계	개인	단체	기타
1월		991,000	881,000	0	110,000
2월		3,571,320	2,432,000	1,070,000	69,320
3월		909,190	200,000	600,000	109,190
4월		597,780	280,000	250,000	67,780
5월		813,000	213,000	550,000	50,000
6월		1,313,400	497,000	800,000	16,400
7월		1,490,400	550,400	940,000	0
8월		306,000	176,000	130,000	0
9월		254,670	120,000	130,000	4,670
10월		700,000	170,000	530,000	0
총 계		10,946,760	5,519,400	5,000,000	427,360

## < 나. 지출내역 >

월별	순지출	계	임대료	전화비	상담 활동비	사무비	안건비	피난처 운영비	특별지출
1월		1,462,630	160,000	176,670	13,620	180,290	800,000	132,050	
2월		1,470,120	170,000	161,570	34,800	37,000	800,000	266,750	
3월		1,661,915	260,000	323,260	67,800	9,390	800,000	201,465	
4월		1,548,740	260,000	260,740	33,000	5,500	800,000	109,500	80,000
5월		1,472,250	300,000	185,050	14,000	4,000	800,000	84,700	84,500
6월		1,341,780	300,000	161,780	0	33,000	800,000	47,000	
7월		1,388,690	300,000	108,690	33,000	135,500	800,000	11,500	
8월		1,524,750	300,000	168,450	100,000	52,700	800,000	103,600	
9월		1,284,820	300,000	124,320	0	20,000	800,000	40,500	
10월		1,360,000	450,000	0	0	0	800,000	110,000	
총 계		14,515,695	2,800,000	1,670,530	296,220	477,380	8,000,000	1,107,065	164,500

## < 다. 후원자 명단 >

개인 - 박태룡(10회), 김용민(7회), 배종렬(2회), 재일교포 김정미, 이은섭, 김건호, 정병태(2회), 박승룡, 방려성, 민은기, 강성택(2회)
단체 - 대학촌교회, 나무십자가교회 청년부, 새길교회(박창원.5회), 회년선교회(4회), 새빛교회, 연세대신방과 학생들, 서울대개방과연대씨클, 한길성결교회(10회), 해민교회(10회), 현대교회
기타 - 국제전화비회수, 강연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자료집판매, 방송출연료(cbs 등...) 예금결산이자(3회), 잡지 원고료(한겨레21 등...)
* 명단이 누락되신 분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피난처'와 '귀향모임'으로 계정이 분리되어 운영되었기에 혼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누락으로 판단되시는 분들은 양쪽 모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라. 95년 순수입.지출 결산 및 10월말 현재 잔액총계 >

순수입.지출 결산: 10,946,760원(순수입) - 14,515,695원(순지출) = -3,568,935원(순수입지출잔액)
10월말현재잔액총계: 2,939,071원(95년총수입) - 14,515,695원(95년총지출) = -11,576,624원(잔액)

< 마. 95년 재정평가 >

순수입 대비 지출은 94년(적자8백여만원)에 비해서 적자폭이 3백5십만원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94년에 이어 95년에도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상태는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재정적자 총액은 1천1백5십여만원 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국외로 추방당한 분들의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을 위해서 분리해서 운영해왔던 '귀향모임'의 재정도 적자(1백4십만원)를 내어서 95년 10월말 현재 피난처 관련 재정적자는 1천3백여만원입니다. 재정적자분은 실무간사들에게 월40만씩 지급하던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으로 메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림] 94년 6월 부터 피난처에서 분리해서 운영했던 '귀향모임' 재정을 후원자 구분이 불가능하고 무의미 하다는 판단때문에 95년 11월 1일 부터 다시 '피난처' 재정으로 통합해서 관리함을 알립니다. 양지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림] 지난호 재정보고(귀향모임분)때 농협통장으로 95.4.21-9.5일 사이에 입금하신 17회분의 입금자 명단을 농협측의 전산시스템 고장으로 '미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명으로 처리된 분들의 확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창원새순교회가 이 기간에 4회분, 박진근씨가 1회 입금하였음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호에 류병렬씨로 처리된 5회분도 창원새순교회로 바로잡습니다.

### 제3차 국외활동 피해접수사례 정부제출

95년 10월 5일 2차 국외활동 피해접수사례 88건을 제출한 이후 12월 15 3차 국외활동 피해접수자 552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해당부처(노동부, 법무부, 해운항만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1.성명서 2.산재.임금체불건 신청자 명단, 3.사기횡령사건 청원서 및 명단 4. 사기횡령사건 보도자료 5.실종자 명단)를 실습니다.

1. 성명서 )

추방당한 외국인 산업재해, 임금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 및 보상약속을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금.채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이하 '귀향모임'-은 지난 94년 5월부터 해외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노동하다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보상을 찾아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95년 8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3개월여동안은 중국의 동북3성에서 조선족동포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추방당한 조선족동포 112명, 임금채불자 165명, 한국입국과 관련해 한국인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이 파탄된 53건(271명)의 사기사건, 실종자 3명 등 총 549명의 피해사례를 현지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94년9월12일(1차, 2개국적 23건), 95년 10월5일(2차, 4개국적 88건), 등에 이어 위 549명의 사례를 제3차로 정부(노동부.법무부)에 제출하며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94년 9월 12일 우리의 제1차 피해자 사례(2개국적 23명) 제출을 계기로 노동부장관 발표(94년 9월 16일)를 통해 추방당한 외국인 산업재해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94년 12월말까지 해외 14개국 재외공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해당국가의 언론,정부,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외국인 출국장소에서도 피해구제를 위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안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발표를 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각국에서는 한국을 향한 증오와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방글라데시,네팔,필리핀,중국 등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이 언론을 통해 크게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현지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 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의 불구와 죽음으로 빚더미에 올라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젊은 과부와 어린아이들의 처지는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더 큰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채 가장의 시신을 전달받은 사망자 가족들의 호소는 정당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을 하루빨리 보다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국내취업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선원으로 취업하여 당하는 선상인권유린(폭행,잠안재우기,장기간임금채불,실종 및 의문사,산재 등)과 한국에 입국시켜준다는 빌미로 현지에서 한국인이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가 조선족 동포사회에 만연하여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의법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사람의 인권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누구에게라도 보장되고 향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경제수준에 걸맞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명정부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해외14개국 공관을 통해 외국인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를 모집키로 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1.재외 공관에서 운영키로 한 보상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현지에서의 피해자 접수를 위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2.해당 재외공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와 보상없이 추방하는 기업주를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1.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조아래 피해자들이 출국할때 반드시 보상관계를 확인하고 출국토록 조치키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94년9월12일 발표 때 출국장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단을 작성하여 홍보키로 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하여 확인함)

- 1차로 제출한 사례중에서 미비한 사례들에 대한 재심사와 기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보상금을 산재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원칙을 준수하라 2.기업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관련 노동부 직원에 대한 조사, 보상금을 가로챈 기업주 처벌, 해당 산재자에게 보상금을 재지급 하라)

- 노동부는 산하 전국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산업재해자를 보상없이 출국시킨 기업주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조치하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선원으로 취업하여 구타,폭행,임금체불,의문사 등을 당한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인권유린에 관련된 수산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선족사회에서 한국입국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한국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와 단속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95년 12월 15일

2.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외국인 3차 제출자 명단 )

1)중국인 총 220건-277명(산재112건/임금체불108건-165명)

산재자 명단 총112명/사망1-9/선원사망자10-13/산재14-58,60-100,111,112  
/선원산재자59.101-106/동아건설리비아현장산재107-110 >  
<임금체불자 명단 108건 총165명/1-83국내/84-108선원근무자>

< 산재자 명단 >

성명	본국주소	재해정도
1 이보금(1932.남)	길림성 연길시	사망
2 김정범(1951.남)	요녕성 철령시	사망
3 이선철(1951.남)	길림성 왕청현	사망
4 배태운(1942.남)	흑룡강성 경안현	사망
5 신상희(1960.남)	흑룡강성 상지시	사망
6 박봉기(1951.남)	흑룡강성 경안현	사망
7 김국광(1934.남)	흑룡강성 상지시	사망

8 김찬도(1952.남)	요녕성 심양시	사망
9 김영곤(1970.남)	흑룡강성 하얼빈시	사망
10 박영춘(1965.남.선원)	길림성 화룡시	사망
11 최창기(1964.남.선원)	흑룡강성 목릉시	사망
12 김수근(1969.남.선원)	길림성 왕청현	사망
13 김 강(1972.남.선원)	흑룡강성 해림시	사망
14 허소춘(1953.남)	흑룡강성 상지시	엄지절단
15 이성희(1953.남)	길림성 연변	시력마비,좌측면부신경마비
16 김현주(1931.남)	흑룡강성 경안현	오른손 2.3지절단
17 임성원(1947.남)	치치할시	왼손시력저하
18 임보원(1958.남)	흑룡강성 연수현	왼손부상
19서영철(1948.남)	길림성 연길시	오른손등 손상 및힘줄절단
20 서용수(1955남)	길림성 연길시	대퇴근육손상
21 박봉남(1958.남)	길림성 연길시	왼발뼈 골절
22 김성옥(1955.여)	길림성 룡정시	허리.오른다리손상
23 유철석(1958.남)	길림성 연길시	머리손상
24 김성엽(40대.남)	길림성 연길시	척추뼈손상
25 이명천(1958.남)	흑룡강성 연수현	갈비뼈손상
26 장일화(1935.여)	길림성 용정시	허리부상
27 장룡선(1965.남)	길림성 왕청현	전신심한부상
28 이상호(1958.남)	길림성 서란시	오른손2수지절단
29 김명호(1954.남)	흑룡강성 복안시	고환부상으로 성기능불능
30 김영희(1970.여)	길림성 화룡현	앞이빨4개 및흉부.다리부상
31 이광섭(1934.남)	길림성 용정시	왼무릎뼈 골절
32 이순녀(50대.여)	길림성 왕청현	왼발부상
33 이봉수(1964.남)	길림성 용정시	신장결석
34 한영걸(1935.남)	길림성 왕청현	오른손 화상 및 힘줄3개 절단
35 오명화(1959.여)	길림성 연길시	왼손3.4수지 압괴손상
36 최범식(1934.남)	길림성 연길시	어깨뼈부상
37 이만수(1963.남)	길림성 도문시	오른손2수지 절단
38 김민수(1943.남)	길림성 도문시	오른눈시력저하증
39 최순복(1954.여)	길림성 용정시우안비루관폐쇄 및	오른귀고막파열
40 김성도(1956.남)	길림성 연길시	척추부상
41 김분선(1934.여)	길림성 왕청현	왼쪽엉치뼈부상
42 광한옥(1939.남)	길림성 연길시	왼쪽머리타박상 및 앞면상흉터
43 장명화(30대.여)	길림성 도문시	척추뼈부상
44 김진철(1955.남)	길림성 연변의학원	오른손목힘줄절단
45 황용범(1950.남)	북경시 준의현	좌측다리부상
46 김광준(1971.남)	길림성 왕청현	발뼈가 늘어남
47 김성철(50대.남)	길림성 훈춘시	좌측발등뼈부상
48 이백군(50대.남)	흑룡강성 연수현	다리부상
49 김복자(50세.여)	길림성 연길시	허리손상
50 김경철(1956.남)	길림성 연길시	왼손3.4수지절단
51 전봉학(1966.남)	길림성 화룡시	왼손2.3.4수지절단

- |                   |                                  |
|-------------------|----------------------------------|
| 52 지성남(40대.남)     | 길림성 연길시 원손3.4수지 절단 및 압케손상        |
| 53 박춘생(40대.남)     | 흑룡강성 하얼빈시 무릎뼈부상                  |
| 54 이 추(1955.남)    | 흑룡강성 하얼빈시 우측대퇴부부상                |
| 55 정창호(1660.남)    | 길림성 왕청현 대장과열                     |
| 56 김재원(40대.남)     | 흑룡강성 연수현 손가락 2.3수지손상             |
| 57 김명운(1944.남)    | 흑룡강성 연수현 어깨부상                    |
| 58 김경자(1959.여)    | 흑룡강성 하얼빈시 다리부상                   |
| 59 박주연(1960.남.선원) | 흑룡강성 경안현 오른눈실명                   |
| 60 김성춘(46세.남)     | 흑룡강성 하얼빈시 흉부 및 허리부상              |
| 61 남택만(1938.남)    | 흑룡강성 연수현 원다리부상                   |
| 62 최기철(1962.남)    | 요녕성 철령시 철서가 우측발목절단성골절            |
| 63 진학동(40세.남)     | 흑룡강성 아성시 원손2수지절단                 |
| 64 방문길(1957.남)    | 길림성 용정시 발부상                      |
| 65 윤길수(1950.남)    | 흑룡강성 연수현 허리 및 다리부상               |
| 66 이선우(1934.남)    | 흑룡강성 묵단강시 다리뼈골절                  |
| 67 정 용(1967.남)    | 흑룡강성 허리 및 원다리.눈부상                |
| 68 리홍우(1949.남)    | 흑룡강성 밀산시 화평향 영심및 방광뼈부상           |
| 69 리상현(1952.남)    | 요녕성 철령시 다리부상                     |
| 70 최준복(1949남)     | 흑룡강성 연수현 인민법원 왼쪽발 및 척추부상         |
| 71 김옥룡(1948.남)    | 흑룡강성 밀산시 오른손1.5.수지압케손상.2.3.4수지절단 |
| 72 정순영(58세.남)     | 흑룡강성 해림시 갈비뼈부상                   |
| 73 서광숙(30대.여)     | 흑룡강성 아성시 원손2수지절단                 |
| 74 김정옥(50대.남)     | 요녕성 한산시 늑골골절,복강내출혈.왼쪽콩팥손상        |
| 75 최 일(1970.남)    | 요녕성 개원시 흉부 및 팔다리부상               |
| 76 고명식(1955.남)    | 요녕성 심양시 원손1수지절단                  |
| 77 최명환(1959.남)    | 요녕성 개원시 조선족중학교 우측다리부상            |
| 78 채영성(1972.남)    | 흑룡강성 헤림시 오른눈실명                   |
| 79 백재원(1962.남)    | 흑룡강성 하얼빈시 태평구 오른손가락모두절단          |
| 80 채광호(1954.남)    | 길림성 연길시 태평가 왼쪽눈실명                |
| 81 유재하(1959.남)    | 요녕성 요양시 태자하향 폐간질 섬유화             |
| 82 문지용(70대.남)     | 흑룡강성 수화시 홍화 다리부상                 |
| 83 김진용(1943.남)    | 흑룡강성 아성시 오른눈실명                   |
| 84 이순애(60세.여)     | 흑룡강성 해림시 척추부상                    |
| 85 백낙기(1951.남)    | 흑룡강성 할빈시 향방구 다리부상                |
| 86 박조일(30대.여)     | 흑룡강성 연수현 양팔다리심한화상.오른다리폐용         |
| 87 리 강(1971.남)    | 길림성 연길시 연남가 오른눈실명                |
| 88 이익송(1962.남)    | 흑룡강성 상지시 턱.머리부상                  |
| 89 최일산(1960.남)    | 요녕성 대석교시 전신마비                    |
| 90 박경로(1951.남)    | 요녕성 효명진단결학교 요도손상 성기능상실           |
| 91 최기준(63세.남)     |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우측다리부상               |
| 92 송국도(1961.남)    | 길림성 연길시 하반신부상                    |
| 93 류해옥(1938.남)    | 길림성 도나시 원손1수지폐용                  |
| 94 박승옥(1936.남)    | 길림성 용정 원손2.3수지절단                 |

95 김영식(1956.남)	길림성 연길시	다리떨림.언어장애
96 김은원(1965.남)	요녕성 무순시	오른손2.3.4수지단
97 리 봉(1965.남)	길림성 연길시	머리부상
98 김병수(1935.남)	길림성 연길시	발뒤축뼈부상
99 리병환( ? .남)	길림성 연길시	왼쪽팔목부상
100 이운옥(1947.여)	흑룡강성 아성시	양다리.어깨뼈.머리.내장손상
101 장기광(1964.남.선원)	길림성 안도현	머리.척추부상
102 조일룡((1966.남.선원)	길림성 통정시	팔라리아감염
103 유 창(1960.남.선원)	길림성 연길시	눈시력상실
104 동재수(1952.남.선원)	길림성 용정시	왼손1수지절단 및 척추손상
105 박성일(1960.남.선원)	연길시 연남가	영치뼈씩어들어감
106 유상필(1956.남.선원)	길림성 도문시	두다리운동불구
107 김명복(1955.남.동아건설리비아현장사고)	길림성 연길시	하반신마비
108 김성옥(1967.남.동아건설리비아현장사고)	길림성 연길시	목.머리부상
109 김철호(1962.남.동아건설리비아현장사고)	흑룡강성 밀산시	머리타박상
110 전일호(1961.남.동아건설리비아현장사고)	흑룡강성 밀산시	뇌진탕
111 임 득창(1945.남)	요녕성 대석교시	오른손동상
112 김명식(30대.남)	요녕성 반금시	은몸심한화상

< 임금채불자 명단 >

성명 /	본국주소 /	채불사업장 /	채불기간 /	채불액
1 이기만	길림성 연길시 하남가	한성아파트건설	4개월10일	300만원
2 송동길	산둥성	할렐루야패션	11개월	천만원
3 김태진	길림성 연길시 해방로	돼지농장	8개월	560만원
4 박문일	흑룡강성	용진내장	4개월	600만원
5 김순원	길림성 연길시	원진목형	1개월12일	1백만4천원
6 한장권	길림성 연길시 연남가	대한 통운	9개월	1,000불
7 맹양춘 외1명	길림성 황룡시 재정국	대원산업	7개월14일	142만원
8 김향단	길림성 용정시	남양 주식회사	6개월	165만원
9 권철수 외1명	길림성 연길시 건공가	대도주식회사	1개월4일	140만원
10 양영식	길림성 용정시 전진가	분당건설현장외1	5개월13일	95만원
11 김철수	길림성 연길시 장백향	신원정밀외1	2개월28일	132만원
12 김용수	길림성 왕청현 서의자향	인성도장	1개월	60만원
13 김경철외1명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	세종도장외1	11개월21일	138만원
14 김문환	길림성 연길시	모름	1개월14일	135만원
15 이태룡외1명	훈춘시 하남가	삼영콘크리트	6일	400만원
16 김창규외1명	요녕성 철령현 범하향	벽산건설	3개월11일	240만6천원
17 문광수외1명	길림성 연길시 진학가	헤미리건설	5개월	281만5천원
18 한춘진	길림성 연길시 서산가	신동아 건설	1개월	105만원
19 송철남	길림성 연길시 하남가	신화건설	2개월25일	409만5천원
20 이만익	길림성 도문시 향상가	경원상기	11일	53만원
21 이명해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	재은건설	3개월1일	580만원
22 김충만	길림성 안도현	한양골든샤시	1개월15일	190만원



23	홍충국	길림성 용정시 룡북골목	명진섬유외2	2개월이상	320만원
24	안옥순	길림성 연길시	진양	1개월9일	500만원
25	김관철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	회사명찾을것	2개월	50만원
26	전미숙	길림성 용정시	한국라텍	2개월22일	688불,173901원
27	김찬길	길림성 연길시 우전빈관	태창주택	10개월	2천만원
28	방경수	흑룡강성 동녕현	금성건설	3개월	180만5천원
29	김창길	연길시 북산가 태안골목	대림건설외1	3개월이상	162만원
30	이만월	연길시 지하상가	대진종합설비	2개월	120만원
31	민명석	연변군대간부 휴양소	홍진금형	1개월3일	4,075불
32	윤관덕	길림성	영동공업사	1개월20일	40만원
33	장기광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	대한회사	10개월5일	440불
34	배원복	길림성 연길시	삼원정밀	9개월	440만원
35	서주영	길림성 용정시 토추구진	장우시계의1	6개월6일	93만원
36	방련옥	길림성 연길시 하남가	동해바다일식의1	29일	43만9천6백원
37	함영순	길림성 연길시	도시락주문	1개월10일	80만원
38	방광선	길림성 안도현 장흥향	현대목욕탕	3개월	400만원
39	정병철	길림성 연길시 소영향	원진목형외1	4개월20일	279만4천원
40	최명석	길림성 연길시 역전거리	쌍문aptr현장		12만원
41	박정남	길림성 연길시 국자가	삼원정밀산업	6개월15일	60만원
42	김순복	길림성 연길시	나주호식당	20일	35만원
43	박옥순	길림성 연길시	광적가든	1개월15일	36만원
44	송태봉	흑룡강성 오상시 연화촌	민락공사의1	6개월18일	433만5천원
45	김성철 외4명	길림성 훈춘시 신안가	용진회사	10개월	120만원
46	이철산	길림성 용정시 조양	기아건설	2개월18일	339만5천원
47	김학철	길림성 화룡시 동성진	대인전력	1개월25일	412만5천원
48	김용일	길림성 연길시	동산도장	2개월10일	180만원
49	이영숙	길림성 연길시	부림식당	1개월	70만원
50	허상용	길림성 도문시 흥광향	광덕회사	6일	30만원
51	김석기	길림성 연길시 북산구	쓰리한의자	2개월15일	225만원
52	황석철	흑룡강성 방정현 보흥향	동서코아	4개월	282만원
53	채운화	길림성 연길시 신흥가	성남냉동	1개월17일	110만원
54	박봉준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		6일	17만5천원
55	한일	길림성 연길시 삼꽃거리	신일유지	2개월	315만원
56	김일만	길림성 연길시 공원가	대인전력	1개월	150만원
57	안문자	길림성 용정시 안민가	민속가든	2개월16일	150만원
58	윤갑순 외1명	길림성 도문시	무진장횃집	19일	75만원
59	지길남 외1명	길림성 연길시 북산가	유림포장	18일	60만원
60	현봉익	길림성 도문시 향상가	두양	장려금	370불
61	박영옥	훈춘시 춘성향 영자 5조	창성파이프	15일	35만원
62	김철	길림성 연길시 장하골목	거룡산업	20일	48만원
63	오경호 외2명	길림성 도문시	이화건영	1개월13일	412만5천원
64	오경식	길림성 도문시	중부건설	26일	161만원
65	김순자	길림성 용정시 하서가	구성디자인	4개월	830만원
66	이명근	흑룡강성 연수현 연한진	동양하이콤	2개월	140만원

67	오태성	흑룡강성 동녕현	동진건설	6개월	550만원
68	문지용	흑룡강성 수화시 흥화	창년금속도금	5개월	250만원
69	박영자의외1명	흑룡강성	진성기업	4개월	688만원
70	이오선	흑룡강성 상지저하동		1개월20일	510만원
71	조성자의외1명	흑룡강성 오상시 쌍홍향	청부건설	9개월	450만원
72	권병수의외1명	흑룡강성	경남회사	4개월14일	620만원
73	구성기	요녕성 개주시 서해향	모름	4개월16일	3,472불
74	김수철	요녕성 안둥시 관전현	사조산업	2개월2일	4,950불
75	원봉오		혜조주택	3개월24일	417만원
76	이종환	요녕성 신민시 호태향	신영건설	1개월20일	184만5천원
77	이승병의외1명	요녕성 심양시	남강코너부	10개월 각각	8,250불
78	이광주	요녕성 심양2시 황교구	신복건설외2	27일	100만원
79	박명용	요녕성 심양 소가훈구	명지건설	5개월	5백만원
80	김광만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진	세인건설	1개월12일	198만원
81	우복순		한양건설	24일	64만원
82	정광선	흑룡강성 아성시	한양건설	2개월25일	270만원
83	고명옥의외1명	길림성 용정시	한양건설	1개월20일	90만원
84	동금석(선원)	길림성 연길시 장백향	삼호물산	1년10개월	2,435불
85	조일룡(선원)	길림성 용정시	부림수산	4개월20일	1,120불
86	이현의외1명(선원)	길림성 연길시	신동아크로바	1개월	1,120불
87	최철수	길림성 연길시	현대수산	1년 3개월	1300백만원
88	엄금준(선원)	길림성 용정시 하서가	부림수산	7개월5일	1,260불
89	한국남(선원)	길림성 연길시 장백향	사조산업	8개월	900불
90	정춘일의외3명(선원)	흑룡강성 목릉시	한국농수산		1,600불
91	한광호의외2명(선원)	흑룡강성 해림시 신안향	동원수산	12개월	2,400불
92	김창열(선원)	길림성 화룡시 수호가	선일회사	11개월	1,725불
93	정용걸의외3명(선원)	길림성 용정시	남양사	각8개월17일	2,816불
94	김량섭(선원)	길림성 용정시 길승가	선일회사		1,800불
95	김찬 의외1명(선원)	훈춘시 양포민족향	남양원양선	7개월20일	1,408불
96	권동근의외1명(선원)	요녕성 무순시 신린현	동원산업	각6개월10일	480만원
97	김경철의외1명(선원)	흑룡강성	사조산업	각6개월7일	2,400불
98	로광봉(선원)	흑룡강성 철려시	사조산업	6개월4일	1,220불
99	김 철(선원)	흑룡강성 임구현	사조산업	6개월5일	1,200불
100	김운태(선원)	흑룡강성 경안현 근로진	동원산업	5개월5일	2,750불
101	정춘산(선원)	흑룡강성 해림시 해남향	성진콜롬비아	19개월24일	8,700불
102	최정남의외5명(선원)	요녕성 관전현 석호구향	대림수산	각1년	4,620불
103	김대곤의외10명(선원)	요녕성 관전현 석호구향	대우원양	각8개월	4,950불
104	김봉국의외4명(선원)	환인현 아하국향	사조산업	2년	1,500불
105	최창철의외2명(선원)	환인현 피마자진	대우원양	각1년	6,630불
106	장유명(선원)	요녕성 개주시 서해향	대림수산	5개월	11,319불
107	정영척(선원)	요녕성 개주시 서해향	대림수산	11개월	2,530불
108	독고해도의외5인(선원)	요녕성 환인현	동원수산	각1년11개월	147,420불

### 3. 청원서(사기횡령사건)

[청 원 인] 귀향모임

[피청원인] 법무부장관

[제 목] 중국교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수사 청원

#### 청원의 취지

최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교포집단지주지역인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다니면서 한국초청 등의 구실로 엄청난 돈을 사취 잠적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빈발함으로써 중국교포사회가 황폐화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신 및 대내적 법의식이 추락하고 있으므로 조사하시어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의 이유

##### 1) 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1994년 5월경부터 활동하고 있는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체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은 그동안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에서의 활동을 거쳐 1995.8.23 부터 1995.10.13 까지 중국 동북3성 조선족거주 지역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산재를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외국인노동자를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요녕신문, 연변일보, 연변라디오, 연변텔레비전 등 현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로 약 150건의 산재사건과 약 100건의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밖에도 한국국민들이 중국교포사회에 저지른 많은 범죄행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교포의 한국입국 열풍을 악용하여 한국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한국초청명목으로 수수료를 사취하거나 횡령한 것이었는 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여유없이 한국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쫓겨난 뒤에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을 악용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노임, 위탁금, 대여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이들을 귀국시킨 후 횡령한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의의 일 뿐만 아니라, 벌써 200만 중국교포사회를 뿌리채 흔들어 버린 중대한 국제상의 문제요, 중국교포사회에서의 알파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외면적 한국열풍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한국의 위신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심각한 국익저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교포사회는 역사적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옛 땅에 터잡고 함께 숨쉬어온 같은 겨레일 뿐만아니라, 남북분단상황에서 통일에 이르는 가교로서 또 통일후 한민족 응비의 전진기지가 될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생각할 때, 중국교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심정적 친밀감을 북돋우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적대감으로 자라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2) 한국초청 수수료 사기 내지 횡령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된 외국인노동력의 국내유입요인에 따라 많은 중국교포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10만 가량 존재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중국교포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국내적으로도 중국교포문제가 심각한 것도 물론이지만 200만 중국교포사회 역시 한국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교포들은 대부분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충격이 적고 어느 정도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면 비교적 치명적 피해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통비 음식값 인건비 등이 대체로 한국의 10분의 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물가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임금수준 및 화폐가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중국교포들은 누구나 한국에 와서 돈벌어 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일부 한국국민들은 이러한 중국교포들의 한국열풍을 이용하여 조선족집단거주지역인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1인당 중국인민폐 3만원 내지 5만원(한국돈 약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입국을 주선하거나 심지어는 초청을 빙자한 사기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국민들이들이 정상적으로 중국교포들을 초청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란 몇가지 서류에 대한 공증비 1인당 한국돈 10만원(인민폐 1000원)정도가 고작이었을 터인데 1인당 한국돈 약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심지어 한사람이 100명씩 사람을 모은 것은 이들이 거짓으로 범을 어기면서 사람장사를 통하여 쉽게 돈을 벌려 했던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국교포들에게 있어서 인민폐 3만원 내지 5만원이라는 돈은 집과 땅을 포함한 전재산을 팔고 친지들에게 높은 이자로 빚을 얻어야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의 돈이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6개월정도에 만회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들은 운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 브로커들은 처음부터 초청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단순히 수수료 사취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수수료를 챙기고 잠적하여 버림으로써 엄청난 수자의 중국교포들이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교포들에게 있어서 수수료를 사취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자원 모두를 날리고 더이상 재기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러 자살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범죄자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1995년 초부터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방지책으로 55세 이하의 젊은 중국교포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증발급허가서를 요구함으로써 브로커들이 중국교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브로커들은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 잠적해버리는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3) 위탁금,대여금,노임 등의 사취,횡령

우리는 이미 한국에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국교포들로부터 자신들이 한국에 체류할 당시 한국사람들에게 맡겨둔 돈이나 빌려준 돈 또는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한 채 출국조치되었으며 귀국한 뒤에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호소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교포들이 한국체류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체류사실이 알려지면 시간적 여유없이 강제출국 되고 출국된 뒤에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을 악용하여 많은 한국사람들이 위탁금,대여금,노임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이들이 귀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귀국하면 곧 보내 주겠다고 속여 이들을 귀국시킨 후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고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심산으로 중국교포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돈을 갚지 않고 이들을 쫓아낸 파렴치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맡겨두었던 돈의 반환을 거절하고 횡령한 것이 횡령죄가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변제할 의사도 없이 이들이 강제출국될 기회만을 노리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나 노임지급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일을시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들의 강제출국을 기회로 연락을 끊고 잠적 도피한 행위등은 단순히 민사상의 대여금,노임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를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들이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을 아직 갚고 있지 못하다는 정도를 넘어 신분과 국경의 장벽을 악용하여 남의 돈이나 근로를 사취하였음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을 방치한다면 한국의 대외적 위신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한 도덕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 4. 보도자료

### 제목 : 한국인의 국제범죄(한국초청 사기, 해외선원 가혹행위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최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중국교포 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위탁금,대여금,노임 등을 횡령하고 추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동북3성 등 중국교포집단지주지역에 다니면서 한국초청 또는 해외진출한국기업으로의 노무수출 등의 구실로 엄청난 수수료를 사취 잠적하거나,한국선박에 고용된 중국교포 등 해외선원들에 대하여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를 중심으로 1994년 5월경부터 활동하고 있는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채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은 그동안 네팔,방글라데쉬,인도,스리랑카,태국,필리핀 등에서의 활동을 거쳐 1995.8.23 부터 1995.11.13 까지 중국 동북3성 조선족거주지역에서 약 150건의 산재사건과 약 100건의 임금채불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행위를 접수하게 되었음.

#### 가. 한국 초청 또는 한국해외진출기업 노무수출 명목 사기

이번에 고소 고발하는 초청사기관련 사례는 29건이지만 대부분 사례의 피해자가 수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접수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아 가히 중국교포사회는 초청사기문제로 민심이 흉흉하고 대한 적대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몇몇 사례들의 경우는 사이판, 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이나 미국 등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음

<사례 38> 피해자 임영호씨 등 100명, 피해금액 1억 1,000 만 여원 (이하 한국돈)

1) 1993.10 경 한국인 유종열씨가 흑룡강성에서 엑스포비자, 연수생비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 매인당 700불, 예약금 200불로 500 명을 모집. 중국교포 임영호씨가 100여 명의 교포를 모집하여 총 45,400,000원 전달하였으나 유씨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구실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

2) 이로 인하여 임씨가 피해자들에 쫓겨다니는 중이고 그 아들이 중국 공안국에 구속되고 그 아내가 정신적고통으로 사망.

직접피해액 4,500여 만원, 이자 2,700여만원 (월 3%), 비용 800만원, 사망 기타 정신적 손해 3,000 만원, 총 1억 1,000만 여원 손해 발생

<사례 5> 피해자 권혁해씨 등 59명, 피해금액 6,550만원

1) 1993.4부터 한국인 주석준 씨가 요녕성 단둥, 철령 등에서 노무수출명목으로 매인당 수수료 350,000원을 받고 중국교포 권혁해, 김순일씨를 통하여 59명을 모집하였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곧 된다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소식을 끊음

2)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진짜로 알고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느라 농사일을 거둬치운 집이 17집이나 되지만 이들은 현재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음. 권씨, 김씨의 재산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법원에 압류당함.

직접피해액 2,950 만원, 이자 약 1,000만원 (월 4%), 비용 약 1,000만원 기타 정신상 피해 등 총 6,550만 여원 손해발생

<사례 36> 피해자 이재복씨 등 30명, 피해금액 3,220 만원

1) 1994년 8월 부터 12월 경에 한국인 구연만 유선순씨가 흑룡강성 경안, 철령 등에서 매인당 예약금 30만원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 중국교포 이재복씨등 총 30명을 모집하여 총 수수료 약 3,220 만원을 받아간뒤 법무부 사증발급허가서가 미비된 일부 서류를 보내준 뒤 1995년 1월 이후 소식을 끊고 잠적

2) 피해자 등이 사증발급허가서를 요구하자 95년 1월까지 해줄 것이며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도주

<사례 10> 사이판 노무수출사기, 피해자 김성모 등 27명

한국인 신태호씨는 1994.3 경 사이판으로 가는 노무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흑룡강성 하얼빈 등에서 매인당 4,400불(약 3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중국교포 김성모 등 27명을 모집하였으나 이들이 사이판에 도착하고 보니 취업시켜주겠다던 한국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명회사였음. 이들은 현지에서 유랑하면서 현지 교회 등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사례 27> 말레이시아 노무수출사기; 피해자 :연변 조선족주정부 노무수출 담당관 등

한국인 유성오씨는 1994.9-10 경 흑룡강성 해림 길림성 연길 등에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노무자를 송출해준다는 명목으로 1,780만원을 가져가면서 부도난 말레이시아은행 선일자수표를 교부하거나, 수표발행증서를 수표인양 교부하고 잠적. 피해자 이영선씨 등 순진한 농민들에게는 수표발행증서를 수표인양 교부하였고, 해외노무수출기회를 확대하려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 노무수출 담당관 오선녀씨(오씨는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에서 파면됨)에게는 부도수표를 교부하고 잠적하는 등 노골적 사기행각.

나. 한국원양어선에서의 해외선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최근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많은 중국교포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선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한국 원양어선임. 이들이 원래 선주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임금은 본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송출인력회사 및 수입인력회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월 200불 내지 240불이 고작임. 그나마 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지급이 전혀 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망, 양다리불구 등 심각한 산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지만, 더욱 처참하고 민망한 것은 한국선박내에서 해외선원들에 대하여 무제한 폭력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하므로 언론의 관심을 각별히 촉구하는 바임 (아래 사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선상폭력사례 접수됨).

<사례 6> '사조'주식회사 '오룡 88호' 폭력사례

중국선원 김경철, 김동수씨는 1994.9.18.부터 1995.3.8.까지 한국 '사조'주식회사 '오룡 88호'어선 (마구리배)에 승선하여 일하는 동안 참혹한 인간이하의 노예취급을 당하였다고 치를 떨고 있음 (이하 김동수씨 진술)

- 1) 사이드를 빨리 보지 못한다고 2항사의 주먹과 발길질에 머리를 맞아 당장에서 까무러쳐 20여분후에야 정신을 차려 깨어났으나 그후 며칠간 정신을 차리지 못함.
- 2) 애다를 받지 못한다고 중국선원 김경철과 인도네시아선원 카소노, 사이꼬 3명으로 하여금 입에 고등어를 물고 5분정도 일하게 함.
- 3) 적수날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애다를 만들고 낚시를 끼웠는데 낚시를 많이 못끼웠다고 햇도가 송곳으로 중국, 인도네시아선원들의 다리를 찌름
- 4) 애다를 못밟는다고 중국선원 김경철과 인도네시아 선원 카소노로 하여금 20분정도 서로 마주서서 경례하게 함
- 5) 파도가 높이 칠 때는 주낙이 엉켜 올라오고 애다가 엉켜 올라와 양승이 끝나면 잘못된 네고애다가 3-4박스 되기가 일쑤인데, 작업이 이렇게 되면 빨리 일을 못했다고 햇도가 선원들을 쇠몽둥이로 힘껏 10대씩 때렸고, 참지 못하여 끊어앉으면 더 때림. 사람 치려고 준비해온 동둥이는 사람을 너무 때려 모두 끊어져 있었음.

6) 싸이드를 빨리 못본다고 햇도가 고기망치(길이30cm, 직경 15cm)로 머리를 쳐 머리가 터짐과 동시에 까무러침, 같은 날 이런저런 원인으로 처리사 갑판장한테도 맞아 3번이나 머리가 터짐.

7) 애다를 못 받는다igo 2항사가 주먹, 발길질로 인도네시아 선원 카소노를 구타했는데 대문으로 바다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김동수가 사리던 애다를 잡고 살아남.

8) 대문을 달다가 파도에 흔들려 바다에 떨어 뜨렸다고 선장한테 귀땀 20여대를 맞고 햇도의 쇠몽둥이에 허벅다리를 40-50대 맞아 며칠간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함.

9) 선장이 선원을 때리지 말라는 규정을 세우자 햇도는 그 후 10여일간은 한국선원은 제외시키고 양승이 끝난후 청소를 3-4번씩 시킨다든가, 일정하여 지워진 뒤에는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녹을 스폰지에 화학약품을 묻혀 계속 문질러 지우게 하는 등등으로 외국선원들을 괴롭힘

10) 영문도 모르는 채 고기 냉동실에서 햇도에게 고기망치, 갈구리몽둥이, 발길질로 15분정도 구타당했는데 몽둥이는 끊어짐

11) 휴식시간에 햇도 갑판장이 때리다 끊어진 참대꼬챙이로 외국선원들을 뒤쫓아 다니며 오락삼아 팔을 때림

12) 파도 등 원인으로 네고 애다가 많이 쌓이면 빨리 사리지 않았다고 오후1시부터 밤 9시까지 저녁밥도 먹이지 않고 장장 8시간 동안 양승조로 하여금 애다를 사리게 함 (4시부터 9시까지는 투승조가 교대하여 애다를 사리는 것임). 저녁밥 안 먹이고 야식(라면, 빵)을 바다에 던진 회수도 20여회.

13) 주장이 깨울 때는 담배불로 팔을 지지며, 햇도 갑판장한테 귀땀맞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은 하루 세끼 밥 먹듯 하였음.

#### <사례 8> 조양그룹 남북수산 '장수 101호,303호' 폭력사례

중국선원 김광수씨는 1994년 6월 20일부터 1994년 11월 10일 까지 한국 조양그룹 남북수산 '장수 101호'장수 303호'에서 일하는 동안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치를 떨면서 지금도 동료선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당한 만큼의 복수를 한국사람들에게 꼭 갚겠다 함.

1) 승선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는 척 하던 한국인들이 티니안항구를 떠나자마자 욕설과 주먹으로 변하여 배치된 장수 101호로 옮겨타기까지 25일정도 장수 303호에 있는 동안 매일 욕먹고 매맞으며 20시간이상 혹사당함

2) 발목이 아파 약먹으러 가겠다고 햇도에게 이야기 했으나 무슨 일이든 중국선원들은 승낙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발목이 잘못될것 같아 침실에 들어가 약을 찾는데 햇도가 따라와 짐승처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찰.

3) 중국선원과 한국선원이 같이 갑판에서 일을 하는데 갑판장이 별다른 이유없이 직경 4-5 cm 되는 참대나무로 중국선원들만 골라 때리는데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고, 그때 왼팔을 맞았는데 즉시 시커멓게 피멍이 들며 팔두께의 두배로 부어오름. 그때 맞은 왼팔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음. 왜 사람을 때리는가 항의했으나 갑판장 하는 말이 "너희 중국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우리는 한국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더욱 혹독히 때림. 이 경과를 선장에게 말하니 선장 하는 말이 "우리들은 일본배에서 더욱 고생했다. 이런일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함.

4) 매일 밥먹는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 8분이나 9분이면 갑판장이나 햇도가 몽둥



이를 들고 와 중국선원들을 밥도 못먹게 밖으로 내쫓았으며,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잠잘 때는 강제로 커피를 먹여 잠을 못자게 함

5) 25일후 장수 101호에 오른 즉시 선장에게 장수 303호에서 갑판장에게 왼팔을 맞아 힘을 쓸수가 없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배가 없다고 돌려보내주지 않고 갑판장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빨리 하라고 주먹질하며 재촉하다가 팔을 맞아 쓰지 못하면 이번에는 머리를 맞으라며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입에서 피가 나오고 낮은 엉망이 됨. 이 때 선장은 브릿지에서 뺨히 내려다 보면서도 아무말 하지 않음

6) 11월14일 사모아항에 내려 한국 대리점에 가서 신고하니 증거가 없다하고 중국에 돌아와 김영삼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으나 감감무소식임.

1. 실종자 목록

실종자이름	진정인	본 국 주 소	특 기 사 항
		최 후 주 소	
김 명 산	처 조혜옥	중국 연길시 복산가 태안골목 6-9 의정부 양돈농장 (0351-866-2370)	1993. 4. 19 이후 실종
이 영 옥	시부 이춘우	중국 연길시 장흥골목 29-13 고양시 삼송동 99-11 혜인학교	1992. 11 이후 실종
전 진 호	처 차복덕	중국 연길 285-4346, 255-8286 송파구 삼전동 180-8 김명택	1993. 8. 16 이후 실종
Ronnie Sembrano	처 Lucilyn Sembrano	149-0 Blanco Court Ignacio St. Pasay City, Philippines 화성군 태안읍 신리 342 동영 텍스타일	69. 4. 11 생 93. 11. 5 입국
Arnel Magrata	처 Marie Luisa Magrata	185 Gen. F. Santos St. Calumpang, Marikina, MetroManila, Philippines Tel. 833-8133 고양시 대기동 794-2 대형인형공장 0344-914-5929	

1. 고소장 명목

번호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	고소사실	피해금액	등기번호
1	강명규 등 6명	김재현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000,000 원	195
2	강철준 등 2명	조규택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320,000 원	80
3	고승범 등 11명	김용환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900,000 원	504
4	권선옥	김효종	대여금 및 노임사취횡령	4,500,000 원	349
5	권혁해 등 59명	주석준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29,500,000 원	413
6	김경철 등 2명	오룡88호	선상폭행 등		344-(2)
7	김광만	문채규	위탁금(노임)횡령	1,980,000 원	429-(1)
8	김광수	최원식 등	선상폭행 등		32
9	김길준 등 10명	원부준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0,000,000 원	45
10	김성모 등 6명	신태호	사이판노무수출명목사기		393
11	김순율 등 3명	윤계영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900,000 원	327
12	김영숙	이형순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00,000 원	221
13	김영종	송영종	위탁금, 노임, 약값 사취횡령	6,002,000 원	122
14	김옥순	이희연	위탁금(계급)사취횡령	5,000,000 원	430-(1)
15	김옥순	유급순	사기에의한 대여, 대여금횡령	10,000,000 원	430-(2)
16	김용순	서경환	약품사취	3,500,000 원	43-(2)
17	김혜숙 등 3명	김단식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500,000 원	104
18	김홍선 등 2명	김문희	노임사취횡령	4,000,000 원	401
19	문덕철	문제량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2,000,000 원	224
20	박경호	김정수 등	미국비자명목수속비사취	4,000,000 원	247
21	박경희	안성수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3,000,000 원	502
22	박봉숙	주영수	창란대금사취횡령	400,000 원	337
23	박영학	송중희	위탁금횡령	17,520,000 원	503
24	박원식	진수용	위탁금횡령	2,800,000 원	19
25	백명옥	이기숙	대여금사취횡령	4,000,000 원	358
26	손정화	전학봉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등	7,950,000 원	317
27	오선녀	유성오	말레이시아노무수출명목사기	8,500,000 원	22
28	원승희	이국성	꿀 횡령	660,000 원	225
29	윤봉자	박유경	위탁금횡령	4,000,000 원	353
30	이광주	송기보	대여금사취횡령	400,000 원	421-(4)
31	이광주	이윤희	대여금 등 사취횡령	400,000 원	421-(5)
32	이광주	임춘근	대여금사취횡령	220,000 원	421-(6)
33	이급자 등 2명	소병훈	위탁금횡령	1,200,000 원	500
34	이상태	윤정식	대여금사취횡령	8,000,000 원	427
35	이생균 등 3명	이원제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5,300,000 원	70
36	이재복 등 11명	구연만 등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9,300,000 원	388
37	이지연	홍성호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840,000 원	336
38	임영호 등 100명	유종열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45,000,000 원	322
39	장용철	김홍갑	여비명목사취횡령	800,000 원	428
40	장인숙	박송원	한국비자명목사기(직업소개소)	9,350,000 원	57
41	정영칙	성낙민	위탁금 및 약값횡령	5,000,000 원	412-(2)
42	조영화 등 2명	이상렬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600,000 원	85
43	주기룡	김삼열	위탁금횡령	11,000,000 원	123
44	지세찬 등 3명	윤길선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6,000,000 원	398
45	최만수	정해성	대여금사취횡령	3,600,000 원	437-(2)
46	최성철	김춘경	한국초청명목수속비사취횡령	1,500,000 원	152

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고 소 사 실	피 해 금 액	등기번호
47	최연옥	이익환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등	800,000 원	193
48	최인건	김옥영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1,000,000 원	261
49	최재임	정옥순	대여금및한국초청수숙비사취횡령	8,800,000 원	164
50	최청송	김희동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1,200,000 원	435
51	한태환 등 4명	원유훈 등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6,000,000 원	228
52	허경남 등 3명	김만수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4,800,000 원	310
53	황기운 등 5명	이광열 등	한국초청명목수숙비사취횡령	6,900,000 원	294

## 피난처.귀향모임 활동소식

### [ 국외활동 사례 총 552명건 정부에 접수 ]

지난 95년 12월 15일 3차 국외활동지인 중국에서 모아온 피해 접수자 552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3월경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후원해 주십시오.

이땅에서 일하다 불구가 되고, 시신이 되어 추방당한 산업제해 외국인 노동자와 남겨진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후원해 주십시오.

“일어설 수도 없고, 아래로는 아무 감각도 없고 죽으니만 못한 신세가 되 버렸어요” “다른데는 다 없어도 좋으니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올해 나이 마흔인 김 명 복(1955년생. 中國 吉林省 延吉市 薪興街 12-6)씨가 하는 말이다.

한창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생활에 바빠야 할 그이지만 사고가 난 후 부터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가족에게 짐만되는 고약한 신세가 되 버렸다. 그가 사고를 당한것은 지난 95년 4월 30일, 몰아치는 모래바람으로 당시 일하던 동아건설의 리비아 건설현장의 이동 작업대가 넘어지면서였다. 당시 작업대 상단에서 작업중이던 그는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는 불구자의 몸이 되었다. 한달 210달러 봉급에 1년 4개월동안의 일한 댓가로는 너무 비싼 것이었다.

그가 사고가 났을 당시 그를 고용하고 있던 동아건설 측에서는 그를 북경의 어느 병원에 던지다 시피 하고는 떠나 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후에 말했다.

그후 그의 가족은 그의 마비된 다리를 고치고자 중국의 인민보험 공사에서 탄 보험료 680여

만원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였으나 보험료만 바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제 사고가 난지 일년이 채 되지 않는 김 명복씨는 누워 있는데 적응이 되지 않아 요즘은 갑갑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젊은 남편의 갑작스런 장애자 신세에 앞날이 캄캄한 부인 정순옥(36세)씨에게 짜증만 부린다. 그러나 정순옥씨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갑자기 탁친 집안 풍파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똥 오줌 받아내야 하는 어린이가 되어버린 남편 때문에 그녀는 이제 13살이 된 딸 홍화의 뒷바라지 조차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둘이 약이나 먹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홍화 때문에...”라고 눈시울을 붉히는 김씨의 부인 순옥씨는 앞으로의 생활고 뿐만아니라 절망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앞날이 막막하다 못해 칠흠같다.



우리들의 안락한 집과 따뜻한 의복과 기름진 음식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좌번호 : 국민) 759-01-0003-515      조흥) 963-04-007950      농협) 100039-52-009856

예금주 : 조명숙

\*6호에 잘못 기재된 국민은행 구좌번호를 조정합니다.